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인 창조기업 요건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간소화(안 제4조)

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교육기관, 전담기관의 지정기간 규정 정비(안 제12조, 제26조, 제41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창업생태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giri76@korea.kr

2) 주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센터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3) 팩스 : 044-204-76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전화 : 044-204-76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법인설립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를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 “(지정기간)”을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이라도 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u></p> <p>2. <u>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u> 부</p> <p>3. (생략)</p> <p><u><신 설></u></p>	<p>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p> <p>① ----- ----- ----- ----- ----- ----- ----- ----- ----- -----.</p> <p>1. <u>법인설립허가증</u> ----- -----</p> <p>2. <u>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u> -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서류 제출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u></p>

서류 제출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가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최종보고에 대한 평가로 재지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제8조 및 제9조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기관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교육기관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동일한 교육사업을 재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사업실적 최종보고에 대한 평가로 재지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41조(지정기간) ① 전담기관의

제41조(지정취소) <삭 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별도 의
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
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이라도 전담기관이 지정요건
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
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 전담
기관-----

-----.

제43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
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